

2020년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9. 22.(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01건(안전번호 제2020-121506호~12245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21506호~121522호는 민원인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만화 저작물을 신고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21523호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121524호는 국외 요리 서적에 기재된 약 118건의 레시피를 요리 블로그 운영자가 복제·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2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52건(안건번호 제2020-3086호~3137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4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48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7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4개 안건, 동일 게시물을 중복으로 청구한 1개 안건(14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7쪽에 블로그명, 도서명, 10쪽에 저작물명, 방영일자, 11쪽에 저작물명, 게시일자, 12쪽에 밴드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고 밴드명은 공개될 경우 불법복제물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므로 밴드명도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D 위원: 이견 없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블로그명, 도서명, 저작물명,

방영일자, 게시일자,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미국 FOX', '미국 CBS', 'tvN', 'MBN', 'Adobe Systems Inc.', '(주)한글과컴퓨터', 'Autodesk Inc.', '넷플릭스', '위너브러더스',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 '유니버설픽처스인터내셔널', '이십세기폭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D 위원, C 위원, A 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20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1506호~121522호는 민원인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만화를 신고

한 사안임.

검토보고서 10쪽에 표로 정리된 게시자를 보면 동일인이 많음. 11쪽 하단에는 합법시장 판매 현황을 조사한 자료임.

(순번 1번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40포인트에 압축파일로 판매중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1506호~12152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 복제한 만화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 A 위원,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1506호~1215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0-121523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신고한 사안으로 게시물 개수는 4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게시물에 접속하면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입니다”라는 팝업창이 보임. 2020. 9. 16.자 공지글에 “△△△ △△ △△△△ △△△ △ △△ △△ △△△△△△△”라고 올렸음.
블로거가 자발적으로 전송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공지를 통해 밝히고 있어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고자 하는 경고의 시정권고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2152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아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D 위원: 이견 없음.

- A 위원: 시정권고 제도의 목적이 저작권법 준수인데 그 목적이 달성 되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견임.
- B 위원: 블로거가 작성한 공지글을 보면 저작권법을 잘 몰라서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시정권고 제도로 인해 계몽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D 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152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1525호~12245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건을 설명하겠음.
(SW 'Adobe Master Collection CS6 ~ CC 2020'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1,47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의 용량은 14,7GB임. Adobe사에서 Creative Cloud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모아놓았고 자동인증이 되는 것으로 보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것으로 추정됨.

Adobe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든 제품을 이용할 경우 연간 플랜으로 매월 지불할 경우 62,000원이고 선지불할 경우 712,800원에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영화 '물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웹하드에서 판매중이며 구매 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음.

'물란'은 2020. 9. 17. 개봉한 미국영화로 2020. 9. 21.기준 박스오피스 2위이고 누적 관객수는 16만명임.

중국 남북조시대 여성 영웅 이야기를 다뤘던 동명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의 실사판 영화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영화를 밴드에서 MP4 파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밴드명은 '♣♣♣'이고 멤버수는 11명임.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공개형 밴드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2020. 8. 5. 개봉했고 2020. 9. 21.기준 박스오피스 7위이고 누적 관객수는 435만명임.

암살자로부터 형이 살해되어 암살자에게 복수를 계획하는 범죄, 액션 영화임.

(음악 'Dynamite'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에서 160포인트에 빌보드 HOT100을 압축하여 판매하고 있음. 'Dynamite'는 2020. 8. 21. 음원을 발매했으며 2020. 9. 22.기준 빌보드 싱글차트 2위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21525호~12245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만화,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1525호~12245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21523호, 12152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0-121506호~121522호, 재2020-121525호~12245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o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2쪽부터 21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086호~3137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4개의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48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7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4개 안전, 동일 게시물을 중복으로 청구한 1개 안전(14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2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9. 29.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